

2021년 8월 도시가스(도매요금 조정) 소비자 요금 조정내역

(단위 : 원/MJ, 부가세 별도)

구분		현행(7월)			조정(8월)			증감 (D'-D)	증감률 ((D'-D)/D)	비고	
		도매요금 (A)	소매공급 비용(B)	소비자요금 (D=A+B)	도매요금 (A')	소매공급 비용(C)	소비자요금 (D'=A'+C)				
주택용	기본요금 (원/월, 가구)			840			840	0	0.00%		
	취사	12.9284	1.5094	14.4378	12.9284	1.5094	14.4378	0	0.00%		
	난방	12.9284	1.5465	14.4749	12.9284	1.5465	14.4749	0	0.00%	516MJ 까지는 취사요금 적용	
업무난방용		14.5903	1.7864	16.3767	15.6730	1.7864	17.4594	1.0827	6.61%		
일반용	영업1	동절기	11.5323	2.9581	14.4904	11.5323	2.9581	14.4904	0	0.00%	○ 계절요금 적용기준 - 동절기 : 12월~3월 - 하절기 : 6월~9월 - 기타월 : 4,5,10,11월
		하절기	11.2514	2.9581	14.2095	11.2514	2.9581	14.2095	0	0.00%	
		기타월	11.2700	2.9581	14.2281	11.2700	2.9581	14.2281	0	0.00%	
	영업2	동절기	11.5323	1.7864	13.3187	11.5323	1.7864	13.3187	0	0.00%	
		하절기	11.2514	1.7864	13.0378	11.2514	1.7864	13.0378	0	0.00%	
		기타월	11.2700	1.7864	13.0564	11.2700	1.7864	13.0564	0	0.00%	
냉방용 공조용	동절기	14.0368	1.7864	15.8232	15.1195	1.7864	16.9059	1.0827	6.84%	12월~3월	
	하절기	8.1679	1.1045	9.2724	8.9799	1.1045	10.0844	0.812	8.76%	5월~9월	
	기타월	12.9202	1.7864	14.7066	14.0029	1.7864	15.7893	1.0827	7.36%	4,10,11월	
산업용	동절기	13.0264	0.8732	13.8996	14.1091	0.8732	14.9823	1.0827	7.79%	○ 계절요금 적용기준 - 동절기 : 12월~3월 - 하절기 : 6월~9월 - 기타월 : 4,5,10,11월	
	하절기	12.0450	0.8732	12.9182	13.1277	0.8732	14.0009	1.0827	8.38%		
	기타월	12.1018	0.8732	12.975	13.1845	0.8732	14.0577	1.0827	8.34%		
연료전지용		11.2524	0.6027	11.8551	12.3345	0.6027	12.9372	1.0821	9.13%		
공동주택 등 열병합용		12.5433	1.1045	13.6478	13.6254	1.1045	14.7299	1.0821	7.93%		
집단에너지 열병합용		12.5433	1.2563	13.7996	13.6254	1.2563	14.8817	1.0821	7.84%		
공동주택 열전용		12.9284	1.5465	14.4749	12.9284	1.5465	14.4749	0	0.00%		
집단에너지 열전용		15.0731	1.2563	16.3294	16.1558	1.2563	17.4121	1.0827	6.63%		
수송용		12.0183	0.6027	12.621	13.101	0.6027	13.7037	1.0827	8.58%		
사회복지 시설용	동절기	13.0264	0.8732	13.8996	14.1091	0.8732	14.9823	1.0827	7.79%		
	하절기	12.0450	0.8732	12.9182	13.1277	0.8732	14.0009	1.0827	8.38%		
	기타월	12.1018	0.8732	12.975	13.1845	0.8732	14.0577	1.0827	8.34%		

- 주) 1. 기본요금은 주택용을 대상으로 840원/월 가구로 적용함.
 2. 가스사용 산정방법 : 기본요금+(사용량(MJ)×MJ당 요금(도매요금+소매공급비용))+계량기교체비용(10등급 이상)
 3. 집단에너지용의 경우 2003.1.1.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아 공급되는 추가 열전용 보일러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단가는 주택난방용을 적용함.
 4.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동제에 따라 적용함.
 5. 상기용도 외에 상호 협정요금 적용시 협정사항을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함.
 6. 발전용 계절별 차등제 폐지 : '21.5월부터 계절별 균등 요금 적용
 7. 조정일시 : 2021. 8. 1. 00:00 사용분부터